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20.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등 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7일(목)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ixhand@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	15
○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형덕·박덕수·제창록·안성환·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 획이 복잡하여 쉽게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하도록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 인영을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20. 8. 20. ~ 2020. 8. 27.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글로 하되 전서체”를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주희 (2680-253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생 략) ② 공인의 인영은 <u>한글로 하되 전서</u> <u>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u>	제3조(인영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한글 훈민정음 창</u> <u>제 당시의 자체</u> ----- ----.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국새규정

제5조(국새의 인문) ①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형덕·한주원·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 획이 복잡하여 쉽게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하도록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 인영을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20. 8. 20. ~ 2020. 8. 27.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0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생략) ② <u>시장</u> , 사업소장, 동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 ⑥ (생략)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u>전서체</u> 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제4조(글씨 및 규격) ① ----- ---- <u>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u> -----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국새규정

제5조(국새의 인문) ①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1) 광명시 공인조례 글자체를 한글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할 시 공인 개각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 생략

※ ‘비용추계 내용’ 작성 제외 대상: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비용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4조 관련)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0일

발 의 자 : 조미수·제창록·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안 제6조)
-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등(안 제7조~제14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20. 8. 20. ~ 2020. 8. 2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4조의4에 따라 광명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의 관계자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심의·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 행정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 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0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일규·이형덕·
김연우·김윤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정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 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안 제19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20. 8. 20. ~ 2020. 8. 27.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동물 문화센터”란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센터를 설치”를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이주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김윤희 (2680-253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반려동물 문화센터</u> ”란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u>문화센터를 설치</u> 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생략) <u><신설></u>	제18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u> -----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 <u>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 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이주방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일규·제창록·이주희·
한주원·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학운동 일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행마을(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20. 8. 20. ~ 2020. 8. 27.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을 “(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도고내마을·별말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연우 (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행방법) 공공형 택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운행방법) ----- ----- ----- -----.
1. 운행지역 대상 마을은 광명6동(두길마을·식곡마을), 광명7동(원광명마을), 학온동(<u>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u>)을 기점으로 하며, 운행지역은 시 관내로 한다.	1. ----- ----- -----(<u>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도고내마을·별말마을</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

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주희·제창록·박덕수·
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분뇨 관련 수수료는 계속 동결중이며, 그간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하수관거 분류식 정비사업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해 분뇨수집·운반 업체들의 경영 운영 어려움이 예상됨
- 시민의 추가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입 수수료를 폐지하고 폐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변경(인상)과 관련한 분뇨처리 수수료 감면으로 수수료 부담 경감(안 별표 6(제20조제1항제1호 관련))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20. 8. 20. ~ 2020. 8. 27.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및 처리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하수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이일규 (2680-2539)

[별표 6]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부과기준	수집·운반 수수료	비고
분뇨	1,000리터(1톤)	14,210원	

※ “수집·운반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생략)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 -----. 1. ----- ----- ----- 수수료 ----- -----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감면 등) ① ----- ----- ----- ----- 수집·운반 ----- -----.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
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
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
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
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
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
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가산금
을 징수한다. 가산금=미납요금×2/1
00×12개월×연체일수/365

②·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이의신청) ① -----
----- 수집
· 운반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

----- 수집·운반 -----

-----.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6]

현행				개정안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제1호 관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제1호 관련)			
부과기준	수수료			구 분	부과기준	수집·운반 수수료	비 고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321원	100원	1,421원	분 노	1,000리터(1톤)	14,210원	
				※ “수집·운반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하수도법

-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제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하수도법의 분뇨처리 수수료는 하수관거 분류식 정비사업 시행 특히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9,560개소 중 약 4,800개소(약 50%) 감소 예정
- 2) 재정비 촉진사업 총 11구역 중 15, 16구역은 건물이 철거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 450개소가 감소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행될 경우 1, 2, 4, 5, 9, 10, 11, 12, 14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4,350개소가 감소 예정
 - 2021년 2, 9, 10, 14구역(약 1,400개소) 이주완료 및 철거 :
1건물 당 5인용으로 계산 시 7,000톤 감소
 - 2022년 1, 4, 5구역(약 1,500개소) 이주완료 및 철거 :
1건물 당 5인용으로 계산 시 7,500톤 감소
 - 2023년 이후 9, 11, 12구역(약 1,450개소) 이주완료 및 철거 :
1건물 당 5인용으로 계산 시 7,250톤 감소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분뇨처리 수수료	예산금액	48	46	39	-	-	-
	산출근거	1,000원* 48,521톤	1,000원* 46,361톤	1,000원* 39,000톤	1,000원* 32,000톤	1,000원* 24,500톤	1,000원* 17,250톤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 없음 (20년 결산 시 약 600만원 불용)